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12. 20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11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
제4차 사회건설위원회(2016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안전건설국장 연동열)

가. 제안이유

-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부칙에 있는 전통시장의 도로점용허가 시설물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점용료 등의 조정(안 제6조)
 -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것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하도록 함.
- 환경개선이 필요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등의 도로점용허가 유효기간을 삭제함.(안 부칙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도로법」 및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설안내 표지판, 구두수선대 등을 삭제하여 정비함.
 - 안 제6조의 점용료 등의 조정에서는 도로를 2개 연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3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을 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함.
 - 재래시장 등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된 전통시장 내 비가리개 등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을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함.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우리 구 행정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82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도로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 구 전통시장 진흥 정책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도로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점용료의 연간 증가율 제한(안 제6조)
- 나. 「도로법 시행령」과 중복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삭제 및 「도로법」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2조, 제9조제2항)
- 다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관련 조항인 조례 제2조제3호의 유효기간(2016.12.31) 부칙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6.10.06 ~ 2016.10.26,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광고판, 사설안내 표지판”을 “광고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가로판매대,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(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)

제6조 중 “별표에”를 “제3조에”로, “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”을 “납부한”으로 “10퍼센트 이상”을 “100분의 10이상”으로, “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69조제3항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”을 “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”을 “점용기간”으로, “법 제97조”를 “법 제63조·제96조 및 제97조”로 한다.

조례 제70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제 69조제3항 별표 4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제9조(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) ① (생략)

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7조(점용료의 감면) <삭제>
부칙(2007. 9.27.)

제3조(유효기간) 제2조제3호와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는 2016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

--.

제9조(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점용기간-----

-- 법 제63조·제96조 및 제97조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점용료의 감면) (현행과 같음)
부칙(2007. 9.27.)

<삭제>